# 기계식주차장업무규정

# 목 차

제1장 총칙	1
제1조 목적	1
제2조 적용범위	1
제3조 정의	1
제2장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인증 및 검사 업무 등	3
제4조 계획수립 등	3
제5조 심사, 인증 및 검사 시행기준	3
제6조 신청서 접수	3
제7조 심사, 인증 및 검사 결과의 기록 및 발급 등	3
제8조 안전도심사 및 검사 수수료	4
제9조 안전도심사반 및 검사반 운용	5
제10조 심사 및 검사실적 보고	5
제11조 전산처리 업무	5
제12조 검사기기의 관리 등	6
제13조 안전도심사원 및 검사원의 자격 등	6
제14조 교육 및 지도·점검	7
제15조 검사 관할지역	7
제3장 교육 업무	7
제16조 교육 종류 및 대상	7
제17조 교육 계획수립	8
제18조 교육 안내	8
제19조 교육 시행	8
제20조 교육 신청 및 접수	8

	제21조	교육 결과	• 9
	제22조	기계식주차장 정보망 장애	10
	제23조	교육 폐강	10
	제24조	교육 수수료	10
	제25조	교육 강사	10
	제26조	교육 교재	11
저	4장 기	계식주차장 사고조사 업무 등	11
	제27조	사고처리 과정	11
	제28조	사고접수 및 보고	11
	제29조	사고조사반의 구성 등	11
	제30조	초동조사반의 임무	12
	제31조	전문조사반의 임무	12
	제32조	사고조사보고서 작성 등	12
	제33조	업무협조 및 지원	13
	제34조	사고현황 분석 등	13
	제35조	사고조사원의 공정성확보	13
	제36조	사고조사원의 제척·기피·회피 ·····	13
	제37조	외부조사원의 위촉	14
	제38조	외부조사원의 임기	14
	제39조	외부조사원의 운영	14
	제40조	기밀유지 및 재산권보호	14
	제41조	사고조사장비의 관리	14
	제42조	사고조사장비의 교체	15
	제43조	사고조사장비 및 안전장구	15

······15	_칙	5장 보	제
	세부지침 등…	제44조	
]	다른 절차와의	제45조	
	•••••	- 칙	부

### 기계식주차장업무규정

2021.08.02. 개정(규정 제1341호) 2023.03.16. 개정(규정 제1418호) 2023.10.17. 개정(규정 제1447호) 2024.12.11. 개정(규정 제1484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기계식주차장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기계식주차장 업무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안전도심사"란 「주차장법」에서 정한 안전도심사를 말한다. <개정 2024.12.11.>
- 2. "안전도인증"이란 「주차장법」에서 정한 안전도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말한다. <신설 202 4.12.11.>
- 3. "검사"란 「주차장법」에서 정한 사용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사를 말한 다. <개정 2024.12.11.>
- 4.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이란 안전도심사 및 안전도인증, 검사, 관리인교육, 안전관리교
- 육, 보수원 안전교육, 사고조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4.12.11.>
- 5. "재심사"란 안전도심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항목에 대하여 보완 완료 후 실시하는 심사를 말한다. <개정 2024.12.11.>
- 6. "재검사"란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항목에 대하여 보완 완료 후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개정 2024.12.11.>
- 7. "관리인교육"이란 「주차장법」에서 정한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신규교육, 관리인 보수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4.12.11.>
- 8. "안전관리교육"이란 「주차장법」에서 정한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 신규교육, 안전 관리 보수교육을 말한다. <신설 2024.12.11.>
- 9. "보수원 안전교육"이란 「주차장법」에서 정한 보수원 안전교육을 말한다. <신설 2024.12. 11.>

- 10. "내부 강사"란 공단 임직원으로서 이 규정에 따라 내부 강사의 자격을 충족하고 지정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24.12.11.>
- 11. "외부 강사"란 이 규정에 따라 외부 강사의 자격을 충족하고 지정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24.12.11.>
- 12. "교육기관"이란 「주차장법」에서 정한 보수원 안전교육,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및 안전관리교육 수행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24.12.11.>
- 13. "사고"란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23에 따른 중대한 사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24.12.11.>
- 가.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 나. 기계식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실시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 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람이 발생한 사고
- 다.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한 자동차가 전복 또는 추락한 사고
- 14. "사고조사반"이란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한 「주차장법」제19조의 22제5항에 따른 사고조사반을 말하며, 초동조사반과 전문조사반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2.11.>
- 15. "초동조사반"이란 사고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에 구성되어, 사고 접수 후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의 개요 및 원인 등을 조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2.11.>
- 16. "전문조사반"이란 공단 본사에 구성되어, 사고에 관하여 피해현황, 사고원인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17. "조사반장"이란 전문조사반 중 해당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조사·보고 등의 업무를 총 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 18. "사고조사원"이란 초동조사반 또는 전문조사반에 구성되어 해당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조사 및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 19. "외부조사원"이란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25제3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또는 안전관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이사장이 사고조사원으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2.11.>
- 20. "사고관련자"란 기계식주차장 사고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 가. 해당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 나. 해당 기계식주차장 사고현장과 관련된 기계식주차장 제작·보수 회사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다. 해당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자
- 라. 해당 기계식주차장 관리자
- 마. 그 밖에 주무부서의 장이 해당 사고와 관련하여 사실적·법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판

단하는 자

- 21. "주무부서" 및 "주무부서의 장"이란 기계식주차장 업무를 주관하고 기계식주차장 안전도심사 및 안전도인증, 수시검사, 교육업무, 사고에 대한 전문조사 업무를 하는 공단 본사 주무부서 및 그 부서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4.12.11.>
- 22. "소관부서" 및 "소관부서의 장"이란 검사 업무, 교육업무 및 사고에 대한 초동조사 업무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의 업무담당 부서 및 그 부서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4.12.11.>

#### 제2장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인증 및 검사 업무 등 <개정 2024.12.11.>

- 제4조(계획수립 등) 주무부서의 장은 안전도심사 및 검사의 수요 및 기술 인력을 고려하여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1.>
- 제5조(심사, 인증 및 검사 시행기준) ① 주무부서의 장은 안전도심사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접수순으로 심사 후 안전도심사서를 발급하고, 안전도인증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접수 순으로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접수순과 관계없이 심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1.>
  - ② 주무부서 및 소관부서의 장은 검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자의 검사희망일을 우선하되 동일한 날을 희망할 경우 접수순으로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재검사 또는 검사 일정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청자와 일정을 협의하여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1.>
  - ③ 재검사는 기술적으로 보완 내용에 대한 사진, 시험성적서, 기타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서류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12.11.>
  - ④ 검사 시행 시 별표 1의 검사원 안전작업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1.>
- 제6조(신청서 접수) ① 주무부서의 장은 안전도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 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 관리대장에, 안전도인증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관리대장에 접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1.>
  - ② 주무부서 및 소관부서의 장은 기계식주차장 검사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기계식주차장 (사용·정기·수시·정밀안전)검사 신청서 접수대장에 접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1.>
  - ③ 주무부서 및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도심사, 안전도인증 및 검사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 (사용・정기・수시・정밀안전검 사・안전도심사・안전도인증) 접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1.>

- 제7조(심사, 인증 및 검사 결과의 기록 및 발급 등) ① 주무부서의 장은 기계식주차장 안 전도심사 결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록하여 발급 및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1.>
  - 1. 안전도심사 결과는 별표 2의 기계식주차장 안전도심사(사용검사)결과표에 의한다. <개정 2024.12.11.>
  - 2. 별표 2의 기계식주차장 안전도심사(사용검사)결과표를 작성할 때 안전도심사에 필요한 계산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 보관용으로 1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3. 안전도심사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 안전도심사 관리대장에 발급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1.>
  - 4. 안전도심사 결과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도심사 신청서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사 결과 불합격 처리된 경우와 안전도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불합격처리된 날과 취소된 날로부터 1년간 안전도심사 신청서를 보존하여야한다.
  - 5. 안전도심사 신청서의 첨부서류 및 안전도심사 결과표,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에서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서식의 기계장 치 검사표, 입출고시간 계산표, 재료규격 검사표, 와이어로프 검사표, 별표 4의 개방치차 검사표를 포함한 결과는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을 이용하여 전산화하고 전산자료는 준영구보존하여야 한다.
  - 6.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에 의한 안전도심사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1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저장장치(CD, USB 등)는 준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 ② 주무부서의 장은 기계식주차장 안전도인증 결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록하여 발급 및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11.>
  - 1.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 안전도인증 관리대장에 발급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2. 안전도인증 신청서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3. 삭제
  - ③ 주무부서 및 소관부서의 장은 검사 결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록하여 발급 및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11.>
  - 1. 사용검사는 별표 2의 기계식주차장 안전도심사(사용검사)결과표에 의하며 정밀안전검사는 별표 3의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결과표에 의한다.
  - 2.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8제5항 및 제16조의26제6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검사확인증, 기계식주차장 사용금지표지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기계식주차장 (사용·정기·수시·정밀안전)검사 확인증 및 사용금지표지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3. 재검사 결과에는 부적합 사항에 대한 보완 전·후 자료(사진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적합 사항이 보완 자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기계식주차장 검사 신청서 및 결과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1.>
- ④ 제1항제3호, 제2항제1호, 제3항제2호에 따라 발급된 안전도심사서, 안전도인증서, 기계 식주차장 검사확인증, 사용금지표지에 대하여 분실 등의 사유로 신청자로부터 재발급 요청이 있을 때에는 주무부서 또는 소관부서의 장은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을 이용하여 재발급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자료는 보존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폐기할 수 있다.
- 제8조(안전도심사 및 검사 수수료) 기계식주차장 안전도심사 및 검사 수수료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9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범위를 준용한다. <개정 2024.12.11.>
- 제9조(안전도심사반 및 검사반 운용) ① 안전도심사는 2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실시하되, 제13조의 기계·전기분야 및 이와 유사한 분야의 자격을 갖춘 심사원을 각각 1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유압방식의 주차장치에 대한 안전도심사의 경우에는 심사원 1인 이상으로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4.12.11.>
  - ② 검사는 2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실시하되, 제13조의 기계·전기분야 및 이와 유사한 분야의 자격을 갖춘 검사원을 각각 1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검사원 2인 중 1인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검사책임자로 정한다. <개정 2024.12.11.>
  - 1. 상위직급인 자
  - 2. 해당직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 3. 생년월일이 빠른 자
  - ③ 제2항에 따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사원 1인 이상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2.11.>
  - 1. 재검사
  - 2. 2단식 및 다단식 주차장치 중 승강식의 정기검사
- 제10조(심사 및 검사실적 보고) 주무부서 및 소관부서는 매월 별지 제6호서식의 기계식주 차장 실적보고를 다음달 5일까지 주무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전산처리 업무)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11.>
  - 1. 제6조의 안전도심사 및 인증, 검사 신청서 접수 및 관리
  - 2. 제7조의 안전도심사 및 인증, 검사 결과 및 기록
  - 3. 기계장치 검사표
  - 4. 재료규격 검사표

- 5. 개방치차 검사표
- 6. 와이어로프 검사표
- 7. 접지 및 절연저항 검사표
- 8. 입출고시간 계산표
- 9. 제10조의 안전도심사 및 검사실적 보고
- 10. 제12조제4항의 검사기기 관리대장
- 11. 제21조제1항의 교육에 대한 기록관리
- 12. 제21조제5항의 교육 수료증
- 13. 제21조제5항의 교육 수료증발급대장
- 14. 제28조제2항 부터 제4항의 사고현황보고
- 15. 제34조의 사고현황 분석에 대한 기록관리
- 16. 제41조제2항의 사고조사장비 이력대장
- 제12조(검사기기의 관리 등) ① 주무부서의 장은 매년 1월 「국가표준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국가기술표 준원 고시)에 따라 인정 검사 기관에 검사기기에 대한 교정검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말일까지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그 대상기기 및 교정주기는 별표 5의 교정검사 대상 및 주기(기계식주 차장 검사장비)와 같다.
  -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수립된 시행계획에 따라 검사기기의 교정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교정검사 만료일 전까지 교정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소관부서의 장은 검사기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책임자는 검사기기에 대한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정비를 시행한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검사기기 관리대장에 주요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고장 또는 상태불량 등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주무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1.>
  -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정검사를 받은 때에는 교정(시험)검사 결과를 차기교정일까지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⑥ 소관부서의 장은 검사기기의 고장 등으로 사용이 부적합한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⑦ 검사기기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중대한 고장 또는 수리에 장시간 소요되는 고장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검사기기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검사기기 고장 발생(수리) 보고를 작성하여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⑧ 검사기기의 교체는 주무부서의 장이 「예산회계규정」에서 정하는 내용연수 또는 기

- 기의 성능을 고려하여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용연수 도달 이전에도 교체할 수 있다.
- 1. 고장발생이 빈번하여 검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 2. 고장이 발생한 때 수리가 불가하거나 수리비용이 취득금액의 50%를 초과할 경우
- ⑨ 소관부서의 장은 검사기기 인수 시 받은 사용설명서, 정비매뉴얼을 보관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전산 파일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
- ① 주무부서 및 소관부서의 장은 검사기기의 관리전환 또는 불용 처분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물자관리지침」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제13조(안전도심사원 및 검사원의 자격 등) 안전도심사원 및 검사원은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전기분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보유자여야 한다. <개정 2024.12.11.>
- 제14조(교육 및 지도·점검) ① 주무부서의 장은 기계식주차장 업무 인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1.>
  - 1. 검사원의 자질향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기계식주차장 검사 예비 인력이 기계식주차장 검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주차장법령의 개정에 따라 검사기준 등이 변경된 경우 <신설 2024.12.11.>
  - ② 주무부서의 장은 교육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과목·기간·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주무부서의 장은 기계식주차장 업무 및 기계·기구 관리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1.>
- 제15조(검사 관할지역) 주무부서의 장은 검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본부별로 관할지역을 조정하여 검사업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제3장 교육 업무

- 제16조(교육 종류 및 대상) ① 공단에서 시행하는 교육 업무의 종류는 관리인 신규교육, 관리인 보수교육, 안전관리 신규교육, 안전관리 보수교육, 보수원 안전교육으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업무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4.12.11.>
  - 1. 관리인 신규교육: 「주차장법」제19조의20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교육을 신규로 받고자 하는 자 <개정 2024.12.11.>
  - 2. 관리인 보수교육: 「주차장법」제19조의20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17에 따라 선임된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이 신규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받아야 되는 교육의 대

상자 <개정 2024.12.11.>

- 3. 안전관리 신규교육: 「주차장법」제19조의20에 따라 수용대수 20대 미만의 기계식주차 장을 직접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으로 안전관리교육을 신규로 받고자 하는 자 <신설 2024.12.11.>
- 4. 안전관리 보수교육: 「주차장법」제19조의20에 따라 수용대수 20대 미만의 기계식주차 장을 직접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안전관리 신규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받아야 되는 교육의 대상자 <신설 2024.12.11.>
- 5. 보수원 안전교육: 「주차장법」제19조의14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보수하는 보수원 <신설 2024.12.11.>
- ③ 관리인 신규교육 및 관리인 보수교육 신청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의무교육 및 예비교육 대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4.12.11.>
- 1. 의무교육 대상: 「주차장법」제19조의20 및 「주차장법 시행령」제12조의10에 따라 20 대 이상의 자동차를 수용하는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자
- 2. 예비교육 대상: 의무교육 대상을 제외한 관리인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 ④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은 대면교육과 비대면교육으로 구분지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2.11.>
- 제17조(교육 계획수립) 주무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전년도 12월까지 수립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필요 시 임시교육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12.11.>
  - 1. 교육 과정별 연간 교육 대상자 및 교육 횟수
  - 2. 월별 교육일정 및 교육장소, 수용인원
  - 3. 교육계획 공지 방안
  - 4. 교육장 약도
- **제18조(교육 안내)** 주무부서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수립된 교육 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1.>
  - 1. 관할 지자체에 매년 1월 해당연도의 교육 일정 <개정 2024.12.11.>
  - 2. 관리인 의무배치 시설 중 관리인 미배치된 시설에 분기마다 교육안내문 발송
  - 3. 안전관리교육 대상자 및 미수료한 관리자등에 대하여 분기마다 교육안내문 발송 <신설 2024.12.11.>
  - 4. 관리인 보수교육 대상자 및 미수료한 관리인에 대하여 분기마다 교육 안내문 및 SMS 를 발송. 다만, 예비교육 대상자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4.12.11.>
- 제19조(교육 시행) ① 주무부서의 장은 제17조의 계획에 따른 비대면 교육 및 보수원 안전

- 교육(대면)을 시행하며 필요시 소관부서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11.>
-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7조의 계획에 따라 관리인 신규교육 및 관리인 보수교육, 안전관리 신규교육 및 안전관리 보수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교육에 대한 지원 필요 시 주무부서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11.>
- ③ 교육 과정별 교육내용, 교육주기, 교육시간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14, 제16조의16 및 제16조의18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2.11.>
- 제20조(교육 신청 및 접수) ① 제1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은 기계식주차장 정보 망을 통한 사전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당일 현장신청은 확보 가능한 공석에 한하여 선착 순으로 접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12.11.>
  - ② 교육담당인력은 교육 당일 접수 시 교육신청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본인 확인 후 입과 시켜야 한다.
  - ③ 교육담당인력은 교육접수 당일 현장신청자에 한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 신청서 (현장 접수용)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11.>
  - ④ 교육담당인력은 교육 중 교육참석자의 출석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⑤ 비대면 교육은 온라인 교통안전교육 통합 플랫폼(이하 "TS-배움터"라 한다)을 통해 교육신청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⑥ 비대면 교육신청자는 교육 신청 시 교육수수료 납부를 완료하고, 주무부서의 장은 교육신청자의 정보 및 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승인하고 입과시켜야 한다.
- 제21조(교육 결과) ① 주무부서의 장은 제1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에 대한 교육장소, 교육강사, 교육일정, 교육대상, 교육신청자, 교육수료자, 교육 수입금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1.>
  - ② 소관부서의 장은 관리인 신규교육 및 관리인 보수교육, 안전관리 신규교육 및 안전관리 보수교육에 대한 결과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주무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개정 2024.12.11.>
  - 1. 별지 제11호서식의 교육결과 보고서 <개정 2024.12.11.>
  - 2. 별지 제12호서식의 수료증발급대장
  - ③ 소관부서의 장은 교육 중 무단으로 결석한 교육참석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별지 제13 호서식의 교육 결석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주무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1.>
  - ④ 제1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중 대면교육은 1교시 이상 미수강 시 미수료 처리된다. <개정 2024.12.11.>
  - ⑤ 교육신청자가 제1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중 대면교육을 수료한 때에는 「주 차장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수료증발급대장에 발급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1.>

- ⑥ 제5항에 따라 발급된 제1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의 수료증에 대하여 분실 등의 사유로 신청자로부터 재발급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본인확인을 하고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을 이용하여 재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1.>
- ⑦ 비대면 교육을 신청한 자는 수강 시 전 과정을 모두 수강한 다음, 최종평가에 응시하여야 하며, 최종평가는 총 20문항으로 구성한다.
- ⑧ 비대면 교육으로 수강하는 경우 진도율과 최종평가는 각각 5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며, 진도율과 최종평가를 합하여 총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수료로 인정된다. 이 경우, 「주차 장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1.>
- ⑨ 비대면 교육의 최종평가는 신청한 교육기간 내에 한해 재응시를 할 수 있다.
- ① 제8항에 따라 발급된 수료증은 교육 신청자가 직접 TS-배움터에서 출력하도록 하고, 신청자로부터 별도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주무부서의 장은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을 이용 하여 재발급 할 수 있다. <개정 2024.12.11.>
- ① 주무부서의 장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4조의14제5항에서 정한 교육결과를 입력하려는 교육기관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 정보망 이용 등록·말소(교육기관용) 신청서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신설 2024.12.11.>
- 제22조(기계식주차장 정보망 장애)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의 장애가 발생하여 원활한 교육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 1. 제1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접수 명단의 작성은 별지 제17호서식의 현장 접수 대장을 작성한 후 장애 복구 시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 <개정 2024.12.11.>
  - 2. 기계식주차장 정보망 장애로 수료증 발급이 불가한 경우 수료자 개별등기우편 송부. 다만, 교육 수료자가 직접수령을 요청할 경우 인근 소관부서 지역본부에서 발급
- 제23조(교육 폐강) 제1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폐강은 근무일을 기준으로 교육 시행 3일 전까지 교육신청자가 10명 미만일 경우에 할 수 있으며, 폐강에 따른 업무는 다음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12.11.>
  - 1. 주무부서의 장: 교육 대관장소에 폐강 통보 등 일정 조정 <개정 2024.12.11.>
  - 2. 소관부서의 장: 교육 신청자 등에 대한 개별 통보 <개정 2024.12.11.>
  - 3. 폐강에 따른 대관료 위약금 등은 대관에 따른 위약금 등의 약정 준용
- 제24조(교육 수수료) ① 교육 수수료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14(보수원 안전교육) 및 제16조의16(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받은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4.12.11.>
  - ② 교육 수수료는 교육 2교시 경과 전까지 받아야 한다. 다만, 비대면 교육 수수료는 제 20조제6항에 따라 교육 신청 시 납부하도록 한다. <개정 2024.12.11.>

③ 교육 수수료의 환불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개정 2024.12.11.>

구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레메크 O	교육 2교시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육수수료의 전액		
대면교육	교육 2교시 경과 이후	환불하지 않음		
비대면교육	수강시작일 7일 이내이며, 강의 진도율 50%미만인 경우(교육신 청자가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교육수수료의 전액		
	수강시작일 7일 초과 또는 강 의진도율 50%이상인 경우	환불하지 않음		

#### 비고

-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14제2항에 따라 보수원 안전교육은 6교시까지 하고, 제16조의16 제4항에 따라 관리인 신규교육과 안전관리 신규교육은 4교시까지 하고, 관리인 보수교육과 안전관리 보수교육은 3교시까지 한다. <개정 2024.12.11.>
- 제25조(교육 강사) ① 주무부서의 장은 안전도심사 및 검사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 된 공 단소속 직원을 내부 강사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비대면 교육의 경우에는 주무부서의 장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11.>
  - ② 주무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외부 강사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에 따른 적임자가 없거나 지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경력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 1. 주차장법 시행규칙 [별표1]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24.12.11.>
  - 2. 기계식주차장 관리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개정 2024.12.11.>
  - 3. 삭제 <삭제 2024.12.11.>
  - ③ 교육강사료는 「강사료등제수당지급세칙」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제26조(교육 교재) ① 제1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교재 제작 업무는 관련업무자 가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부 강사도 교재 제작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4.12.11.>
  - ② 제1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교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14제2항 및 제16조의16제2항에 규정된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1.>
  - ③ 외부 강사가 제1항에 따라 교육 교재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교재 작성에 따른 원고료는 「강사료등제수당지급세칙」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1.>

#### 제4장 기계식주차장 사고 조사 업무 등

제27조(사고처리 과정)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24 및 제16조의25에 따른 사고 발

생 시부터 접수·조사·분석·보고에 이르기까지의 기계식주차장 사고처리 절차는 별표 9의 기계식주차장 사고 처리 절차도와 같다. <개정 2024.12.11.>

- 제28조(사고접수 및 보고) ① 접수자(공단 기계식주차장 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는 사고가 접수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소관부서의 장에게 전화(문자), 이메일, 팩스 등 가장 빠른 방법으로 상황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1.>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전자문서로 기계식주차장 사고현황보고서 내용을 지체 없이 주무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 보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메일, 팩스 등으로 보고할 수 있다.
- ③ 주무부서의 장은 기계식주차장 사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기계식주차 장 사고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사고가 종결되는 시점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1.>
- ④ 주무부서의 장은 기계식주차장 사고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고발생지역 소관부서의 장에게 신속히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하도록 지시할 수 있 다.
- 제29조(사고조사반의 구성 등) ① 사고조사반은 사고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에 구성되는 초동조사반과 주무부서에 구성되는 전문조사반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2.11.>
- ② 제28조제4항에 따른 지시를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2명 이내의 사고조사원으로 초동조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1.>
- ③ 주무부서의 장은 조사반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내의 사고조사원으로 전문조사반을 구성하되, 조사반장 및 사고조사원은 공단 소속직원 또는 외부조사원 중에서 지명한다.
- ④ 사고조사반장은 기계식주차장 업무 경력 5년 이상인 자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1.>
- 제30조(초동조사반의 임무) ① 제28조제4항에 따른 지시를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초동조사반을 구성하여 사고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초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11.>
- 1. 사고의 개략적 규모 및 원인의 조사
- 2. 사고와 관련된 증거자료의 확보
- 3. 사고현장 보전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사고현장이 변경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
- 4. 별지 제19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 사고현황보고서의 작성 <개정 2024.12.11.>
-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용을 주무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그 내용을 입력한 경우에는 보고한 것으로 본다.
- **제31조(전문조사반의 임무)** 제30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주무부서의 장은 전문조사

실시여부를 판단하여 전문조사반을 구성한 다음 사고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전문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11.>

- 1.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현장보전 조치 유지 또는 훼손 여부를 확인하고, 사고원인규명
- 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개정 2024.12.11.>
- 2. 사고 경위에 관한 조사
- 3. 피해현황에 관한 조사
- 4. 사고원인의 분석에 관한 조사
- 5. 사고재발방지에 관한 조사
- 6. 그 밖에 조사반장이 사고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2조(사고조사보고서 작성 등) ① 주무부서의 장은 사고조사 완료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표 11의 사고조사보고서에 따라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사한 달이속하는 다음 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고조사위원회로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1.>
- 1. 사고조사의 경위에 관한 사항
- 2. 사고와 관련하여 조사 · 확인된 사항
- 3. 사고원인의 분석에 관한 사항
- 4. 사고재발방지에 관한 사항
- 5. 사고조사 과정에서 입수한 증거자료
- ② 주무부서의 장은 정확한 사고조사 결과 분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에 시험·검사· 의견조회 등을 의뢰할 수 있다.
- ③ 주무부서의 장은 외부기관 등에 대한 시험·검사·의견조회 등으로 인해 제1항에 따른 제출기한에 사고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고조사위원회에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1.>
- 제33조(업무협조 및 지원) 주무부서의 장은 소관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이에 적극협조 또는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1.>
- 1. 사고조사원 현지파견을 위한 출장사항
- 2.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3. 기타 사고조사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
- 제34조(사고현황 분석 등) 주무부서의 장은 사고조사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별표 12의 기계식주차장 사고 분류기준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사고원인 및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1.>
- 제35조(사고조사원의 공정성확보) ① 사고조사원은 모든 사고조사 업무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배제되어야 하며, 중립적으로 공정하고 청렴하게 조사를 수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21호서식의 보안 및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1.>

- ② 이사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압력을 수용하거나 다른 조사원에게 부당한 압력을 종용한 사고조사원에 대하여는 즉시 사고조사원에서 해촉하여야 한다.
- 제36조(사고조사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주무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고조사원을 해당 사건의 사고조사반에 참여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11.>
- 1. 본인과 배우자가 사고관련자 인 경우
- 2. 본인이 사고관련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본인이 속한 법인이 사고관련자의 법률, 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 사실적·법적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 3.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한 법인이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 4.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한 법인이 사고의 원인이 된 작위 ·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 ② 사고관련자는 사고조사원이 사고조사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서의 장에게 사고조사원의 당해 사건에 대한 사고조사반 편성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주무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 사고조사원을 해당사건의 사고조사반에 참여 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④ 사고조사원은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서의 장에게 알리고 스스로 당해 사건의 사고조사반 편성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37조(외부조사원의 위촉)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외부 조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1.>
- 1. 기계, 전기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 2.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기계, 전기 또는 안전관리 분야 과목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경력소지자
- 3. 기계식주차장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소지자
- 4. 기계, 전기, 산업안전관리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소지자
-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외부조사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외부조사원 등록 신청서에 외부조사원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38조(외부조사원의 임기) 외부조사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3년 연임 할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연임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4.12.11.>
- 1. 외부조사워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외부조사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39조(외부조사원의 운영) ① 외부조사원은 제29조제3항에 따른 사고조사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확인증을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1.>
- ② 제1항에 따른 외부조사원에게는 「강사료등제수당지급세칙」에 따른 수당과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0조(기밀유지 및 재산권보호) ① 사고조사업무와 관련된 모든 임직원은 조사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득한 사고관련자의 기밀을 임의로 외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고관련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② 사고조사업무와 관련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4제3항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비공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2.11.>
- 제41조(사고조사장비의 관리) ① 주무부서의 장은 사고조사장비에 대한 교정검사계획을 수립하고 「국가표준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국가기술표준원고시)에 의하여 교정(시험)검사를 받아야하며 그 대상기기 및 교정주기는 별표 13의 교정검사 대상 및 주기(사고조사장비)와 같다. <개정 2024.12.11.>
- ② 사고조사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무부서의 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책임자는 검사기기에 대한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정비를 시행한 결과를 별지 제23호서식의 사고조사장비 이력대장에 주요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1.>
- ③ 주무부서의 장은 사고조사장비의 고장 등으로 사용이 부적합한 때에는 이를 수리 또는 교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교정검사를 받은 때에는 교정(시험)검사 결과를 차기 교정일까지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1.>
- 제42조(사고조사장비의 교체) 사고조사장비의 교체는 「예산회계규정」에서 정하는 내용 연수 또는 장비의 성능을 감안하여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장비의 내용연수 이전에도 이를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24.12.11.>
- 1. 고장발생이 빈번하여 사고조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주무부서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 2. 고장이 발생한 때 수리비용이 취득금액의 5할을 초과할 경우
- 제43조(사고조사장비 및 안전장구) ① 사고조사장비 및 안전장구는 사고조사에 필요한 장

비로서 성능이 유지되는 장비이어야 한다. <개정 2024.12.11.>

- ② 사고조사장비의 성능유지를 위한 교정 및 수리와 예방점검 등에 관한 사항은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다. <개정 2024.12.11.>
- ③ 안전장구는 사고조사 시 사고조사관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장구로 기계식주 차장 정밀안전검사 안전장구로 대체할 수 있다.

### 제5장 보칙

제44조(세부지침 등)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기계식주차장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1.>

제45조(다른 절차와의 분리) 사고조사는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사법절차, 행정처분절차 또는 행정쟁송절차 등 다른 절차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11.>

#### **부 칙** <규정 제1285호, 2020.06.0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에 의해 「기계식주차장 사고조사 업무 규정」은 폐지한다.

#### 부 칙 <규정 제1341호, 2021.08.02.>

이 규정은 2021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418호, 2023.03.16.>

이 규정은 2023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447호, 2023.10.17.>

이 규정은 2023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484호, 2024.12.11.>

이 규정은 2024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검사원 안전작업수칙

- ① 검사 시작 전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 보호장구 착용을 철저히 하고, 기계식주차장치 내부에 외부인이 출입을 하지 않도록 안내 표시장치를 설치하고 점검 중 조작금지 표지를 기계식주차장 외부 조작반에 부착하여야 한다.
- ② 승강로, 기계실 등과 같이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검사할 때에는 사고 예방을 위해 추락 방지용 안전대를 착용하고 반드시 안전벨트, 고리 등의 상태를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와이어로프를 검사할 때에는 안전한 공간에서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움직이는 와이어로프에 손이나 작업복 등이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④ 검사원과 기계식주차장치 조작자 간에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실 시간 상호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주차장치 운행 전에는 반드시 상 호 안전 상태를 확인한다.
- ⑤ 기계식주차장치 구동부를 검사할 때에는 작동 중인 회전체(시브, 축 등)와 의 신체 접촉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신체 일부가 회전체에 말릴 위험이 없도록 복장을 단정히 하고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⑥ 회전체 진동 측정 등의 검사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설비가 정지한 상태에서 사전 준비를 마친 후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⑦ 제어반 저압주회로, 전동기, 제동기, 배전기 등에 대한 절연저항을 검사하는 경우 전원 차단 후 잔류 전하를 충분히 방전한 다음 검사 장비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검사하여야 한다.
- ⑧ 시운전 검사 시 사전 장애물이나 위험요소(장비, 구조물 등)를 제거하고, 주차장치 작동 확인 구호를 외친 후 검사하여야 한다.

■ 기계식주차장업무규정 [별표 2](제7조제1항 관련) <개정 2024.12.11>

# 기계식주차장 안전도심사(사용검사)결과표

		7 ) -1 7			검사결과		적	
검사내	8	검사기준	-		설계값	측정값	부	비고
		출입문 또는	: 작동중 T	법근시 정지장치 설치		1		
1 えの)ロ(	ol ファ	자동차 진입	금지 신호	장치설치				
1. 물업군	1. 출입문의 구조		린 경우 조	사동금지장치 설치				
		출입문이 동	시에 열리	지 않는 구조				중렬 제외
	중형기계식	너비 : 2.3m	ı이상					
2.출입구 크기	주차장	높이 : 1.6m	(1.8m) °	상				( )내는 사람이 통행하는경우
1 2 1	대형기계식	너비 : 2.4m	ı 이상					
	주 차 장	높이 : 1.9m						
3. 통	로	폭 : 0.5m 역						
0. 0		높이 : 1.8m						
4. 운반기	공통	운반기내의 장치 설치	정위치가	아닌 경우 작동금지				
내정위치 정차장치	2단(다단)식, 수직순환식 제 외	자동차가 주 동금지장치		이를 초과한 경우 작				
		동작완료 후	- 운반기 위	   치				
		안전가동확	인장치 설치	:]				
		수동정지장	치 설치	운전조작반 출입구 내부 기계실				2단(다단)식은 제외
		정위치2중김	· - - - - - - - - - - - - - - - - - - -	1 1 1				7 112 1
		유압안전밸		1				
		플란자이탈		 対え]				
		유압계, 스톱		· · · · · · · · · · · · · · · · · · ·				
		작동스위치	설치 위치					
	공 통	출입문이 없	l는 경우 7	기동벨 설치				2단(다단)식은 제외
		자동차문열	림감지장치	설치				2단(다단)식은 제외
5.안전 장 치		운반기돌출	방지장치 설	설치				2단(다단)식, 수직순환식 제외
		자동차 추릭	차단장치	설치(지하방식)				2단(다단)식은 제외
		바닥면	출입구 :	150럭스 이상				
		최소조도	주차구획	: 50럭스 이상				
		자연채광	야간조명	시설 설치				
		점등스위치	주차구획,	/출입구의 점등상태				
		승하강안전						
	2 단	수평이동안		 ;]				
	(다단)식	자연하강보						
	스가기시							
	승강기식, 승강기슬라이	운반기 추릭	   방지장치 	설치				
	드식,평면왕복 식	지지로프 또	는 체인 :	2본 이상 설치				

						검사결과		적	
검사내원	<u>8</u> .		검사기	기 준		설계값	측정값	- 역    부	비고
		식 또는  이 있는  치	운반기	내움직임감지장치 <i>^</i>	설치	2/1111	7 0 #/	1	
			운반기		]				
	( .	<del>-</del>		수동조작장치 설치					
				이탈방지장치 설치					
	_	l나됬	로봇내기	사동차간충돌방지장	<b>)</b> 치 설치				
	_ ^	]능형	장애물	감지장치 설치					
				격 이탈하는 경우 🧵	경보음 작동				
				품 보호 여부					
	전동기 기	] 및 감속	최대부	하용량 이상일 것					규정별지제3 _ 호서식(기계장
	브레이			하토오크의 150% 여	기상 일것				치검사표)에기 록한다
		승강기식, 승강기슬 라이드식,	1/4০ ত	접촉 : 로프직경의	12배이상				
6.기계		평면왕복식 제외	1/4초교	접촉 : 로프직경의	20배이상				
0.7   7      장치	시브	브 (금리) (승강기식) (승강기슬 라이드식) 평면하다	승강	시브(드럼)직경:로꼬	프 직경의 30배이상				
	(드덤) 		구동	트랙션시브직경 : 로프 직경의 40 배이상					
			시브(드럼)직경 : 로프 직경의 20바						
	통신정	  え	주차로	፲ <sup>+</sup> 1151.6 롯과 주제어반의 통					
	공 통			0m/min 이상 : 연					
7. 입출.			입고 2시간 이내						규정별지제4호 서식(입출고시
					출고				간계산표)에 기록한다
	규 :	격	KS 또는	- 동등이상재료					규정별지제5호 서식 (재료의
. "			구조부	= 0	4이상				규격검사표 및
8.재료		허용응력		=	7이상				─별지 제6호서 _식(와이어로프
	(안전:	<u>율</u> )	유압호		10이상				_ 기(되어되고)   검사표)에 기   록한다
			너비 : 2	2.2m 이상					
	중형			l.6m 이상					
9.주차			길이 : !	5.15m 이상					
구획				2.3m 이상					
37)	대형		높이 : 1.9m 이상 길이 : 5.3m 이상 (차량길이5.1m이상:차량길이+0.2m이상)						
	중형			<u> ' D.IIII'                              </u>	-   10.2111-   6)				
	대형			비 : 1.95m 이상					
	이격가	리	수평거리 : 4cm 이하 수직거리 : 5cm 이하						
  10. 운반기	주치구	 '획 바닥		이 낙하하지 않을	 것				
10. 판인기	차진형	방향운반  동, 경사		지장치 설치					
	주차로	•	종단경/	사도 4%에 대한 주	행 능력				

					검사결과		적	
검사내	<del>용</del> 			검사기준	설계값	측정값	부	비고
	기 <i>,</i>  강	7]	최 상 부 여유공간	균형추와 완충기의 여유름,균형추 측 완 충기의압축거리 튀어오름량의1/2을 합 한 값보다 클 것				
11.승강로		다드	핏트부분	너비 : 0.5m 이상				
	식, 평 왕	면		길이 : 1.8m 이상				
	식			높이 : 0.6m 이상				
	점 <sup>/</sup>   간	검구	·및점검공	수라점검공간이 있을 것				
	공	전방:	지장치	탑재면 공전방지장치 설치 기계적 고정장치 설치				
	귉	- (ح	중형	5.4m 이상				
12.방향 전환장치 의 구조	회 여 직	유	대형	$\sqrt{(L^2+W^2)}$ 미터 이상 L : 수용가능차량의 길이(m) W : 수용가능차량의 너비(m)				
				중형 : 4.0m 이상				
	기 (파레트포함)			대형 : 4.5m 이상				
	이격거리			수평거리 : 4cm 이하				
				수직거리 : 5cm 이하 외부에 노출되거나 도로와 접하는 경우 1.2m이상				
	울타리			교형추가 이동하는 출입구의 경우 1.8m 이상				
	출입구 내부 틈 새		내부 틈	직경 10cm 미만				
		점	공통	발판과 벽과의 이격거리: 15cm 이상				
		점 검 용		발판의 내폭: 30cm이상				
	,	사 다	승강기식	출입구까지 연결 및 추락방지발판 설치				
		리	0/0/17	기계실바닥부터 사다리 높이: 60cm이상				
13.기타				작업공간의 높이: 1.5m이상				
		작약	법공간	점검구 <i>크</i> 기 60*60cm이상				
				점검구 덮개 설치				
	평 전 전		복식의 안	2단 초과 2단마다 안전망 설치				
	배스	<del>`</del> 설I	<b>∃</b> ]	지하방식 주차장치의 바닥				
		계정 출두	)치의 l분	전동기, 감속기, 브레이크, 감지장치등 보호용 덮개 설치				
			], 제어반 접지저항	사용전압 400V이하:100Q이하, 사용전압 400V초과:10Q이하				
	7]	타	안전기준	법령에 의한 안전기준에 위배 되지 않 을 것				

■ 기계식주차장업무규정 [별표 3](제7조제3항 관련) <개정 2024.12.11>

#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결과표

검사내	<u>g</u>	건사기준 검사기준		검사결과	적부	비고
		출입문의 구조 및 개폐 상태				
		출입문이 열린 경우 작동금지 장치	 설치			
1. 출	출입문이 있는 경우	출입문이 2개인 경우 입고 또는 출용으로 각각 사용하거나, 동시에 ' 않는 구조	고 전			중렬방식제외
입	출입문이 없는 경우	작동중 접근시정지장치 설치				2단식, 다단식
	包括工厂联定 701	기동벨 설치				제외
문		작동스위치 설치위치				
	공 통	적재물 및 간섭물 없을것				
		자동차 진입금지 신호장치 설치				2단식, 다단식 제외
o Oula	h 11구(이ə)구(ə)구(ə)	운반기내의 정위치가 아닌 경우 작 장치 설치	동금지			
1 を せっ	김내정위치정차장치	자동차가 주차구획높이를 초과한 경 동금지장치 설치	우 작			2단식, 다단식, 수직순환식 제외
		동작완료 후 운반기 위치				
		안전가동확인장치 설치				
		- 운전조작반 수동정지장치 설치 출입구내부 기계실				
	7 F					수직순환식 제외
	공 통	유압안전밸브 설치				1 1 1 2 2 1 1 1 1 1
		플란자이탈방지장치 설치				유압직접식제외
		체크밸브,유압계,스톱밸브 설치				17 11 11 11 11 11
		자동차문열림감지장치				
3.		자동차 추락차단장치 설치(지하방식)				2단(다단)식은 제외
안	승강기식 또는 줄입   문이 있는 주차장치	운반기내 움직임 감지 장치				
전		승하강안전장치 설치				
장	2단(다단)식	수평이동안전장치 설치				
		자연하강보정장치 설치				
치	2단(다단)식, 수직순환식 제외	운반기 돌출방지장치 설치				
	승강기식,	운반기추락방지장치 설치				
	승강기슬라이드식, 평면왕복식	지지로프 또는 체인 : 2본 이상 설치				
	다층순환식, 수평순환식	운반기 수평보정장치 설치				
		비상시수동조작장치 설치				
		자동차이탈방지장치 설치				
	지능형	로봇내자동차간충돌방지장치 설치				
	. 10 0	장애물감지장치 설치				
		지정구역 이탈하는 경우 경보음 작	5			
		주요 부품 보호 여부				

	검사내용		검사기준			검사결과		적부	비고
		받침대 고정	및 결선	상태					
		브러시 한계 마모량 상태							
		구분	기준치	1회	2회	3회	평균		
	전동기	기동전류 (A)							
		기동시간 (초)	1회	2호		3회	평균		직입기동은 제외
		분당회전수 (RPM)							
		소음, 진동,	발열 상태	•					
		받침대 고정상티	H, 축, 기어	플랜지접	합상태				
		윤활유의 오염	누유여부,	유량의 🦥	적정성				
4.	감속기	치차의 마모상	태, 기어의	<b>맞물림</b>	상태				
_1		케이싱의 균역	열 및 손성	상 여부					
7]		소음 및 진동							
계	제동장치	브레이크의 핀	면마모 및	라이닝	상태				
	~ ~ ~ ~ ~ ~ ~ ~ ~ ~ ~ ~ ~ ~ ~ ~ ~ ~ ~	이상진동, 소음, 발열 및 누유여부							
장		전동체인의 <sup>-</sup> 장력 상태	부식, 균열	및 파	손,				
치		전동벨트의 /	상태						
	전동장치	개방치차 및 파손 상태 커플링, 유니바							
		및 타원회전,							
		체인, 스프로킷,							
		구동축의 변형 정렬 상태	청이나 마	모 여부	- 및				
	フェルシ	베어링의 변형	형, 파손 !	및 윤활	상태				
	구동장치	커플링의 균형			부식,				
		주요부의 볼!	트 조임 성	상태					
	유압장치	유압장치의 물곡, 변형, 육	손상 여부						
		유압탱크의 무압작동유의	작동 및	유량	상태				
	통신장치	주차로봇과 주제	웨어반의 통	신 상태					

	검사	내용		검사기준	검사결과	적부	비고
		승강기식, 승강기슬라 이드식,	1/4이하접즉	촉 : 로프직경의 12배이상			
			1/4초과접	촉 : 로프직경의 20배이상			
	시브		- - - - - - - - - - - - - - - - - - -	시브(드럼)직경 : 로프직경의 30배이상			
5.와이	(드럼)	승강기식 <i>,</i> 승강기슬라		트랙션시브직경 :로프직경의 40배이상			
어로프		이드식, 평면왕복식	수평이동	시브(드럼)직경 :로프직경의 20배이상			
			7398	트랙션시브직경 :로프직경의 30배이상			
		공통		드럼은 회전상태, 본체의 각의 과도한 마모 상태			
		0 0	속도 300m/r	min 이상: 연질라이너 설치			
			체인의 연	결 및 장력 상태			
	6.체	인	체인의 마.	모율이 1.5%이내일것			
			체인 윤활 상태	및 균열, 파손, 부식, 비틀림			
				고정 및 과도한 균열, · 및 연결볼트 이완, 상태			
7.	기초 및	및 구조	주차철골 연	면결부의 볼트 조임 상태			
			주차철골의 침하 및 부	│ 부식, 균열, 파손, 변형, └재의 용접 상태			
	8.시 등	우저		시 자동운전이 원활하고 래의 기능을 유지할 것			
	0.71	L 'L'	운전 시 이	상소음 및 진동이 없을 것			
			이상소음,	진동, 작동 및 제동상태			
			롤러의 변	형, 손상 및 고정상태			
		공통	로킹핀의	마모, 부식 및 고정상태			
			프레임의 ·	부식, 변형 및 용접상태			
9.방향	고나지		회전범위	내 간섭물 여부			
장치의		점검구 및 점검공간	수리·점검	공간이 있을 것			
		공전방지장치	탑재면 공	전방지장치 설치			
		고정장치	내부 방향경	변환장치의 고정장치 설치			
		시계이미	수평거리 :	: 4cm 이하			
		이격거리	수직거리 :	: 5cm 이하			

	검사내용	검사기준	검사결과	적부	비고
	가이드롤러	동작, 소음 및 편마모 상태			
	가이드레일	설치상태 및 운반기의 이탈 우려 여부			
10. 승강 로 및 주행 로	최상부여유공간	운반기가 최상층을 벗어나 상승하여도 승강로 최상부에는 여유공간을 두어 차량의 파손을 방지할 것			
	전원공급장치 (이동케이블등)	파손, 간섭 및 내부전선의 소손 상태			
		너비 : 0.5m 이상			
	핏트부분의 피난처 크기	길이 : 1.8m 이상			
		높이 : 0.6m 이상			
	주차구획 바닥	자동차를 안전하게 주차시킬 수 있는 강도 및 부식 상태			
	1/119 119	기름 등이 낙하하지 않을 것			
11. 운	차진행방향 운반기이동, 경사운반기	차륜정지장치 설치			
반	경사운반기	종단구배 : 17%이하			
기	주차로봇	종단경사도 4%에 대한 주행능력			
	이격거리	수평거리 : 4cm 이하 수직거리 : 5cm 이하			
	 롤러	구동 상태, 변형 및 손상 유무			
		개폐기 등 단자의 체결 상태			
		계전기 상태			
		차단기의 적정성 및 풀림이나 몰드(Mold)의 파손 상태			
	12.제어반	전자접촉기 접촉면의 거칠음, 마모 및 고정부의 풀림 상태			
		내부배선의 체결상태 및 손상, 오염, 열화여부			
		인버터 케이블의 접속상태 및 팬의 동작 상태			
		단자대 상태			
	게리라 의 >	출입구 : 150Lx이상			
13.	바닥면 최소조도	주차구획 : 50Lx이상			
조 도	점등스위치 위치	주차구획과 출입구 개별 설치			
	자연채광을 이용한 주차장치	최소 1개 이상의 별도 야간 조명 설치			

	 ব	검사	 내용	검사기준	검사결과	적부	비고
				전동기			
				감속기			
				브레이크			
1	l4.૧	<u></u> 난전.	도 검증	유압펌프			안전도검증 결과 참조
				전동장치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			
				구동축 및 베어링			
	오F	타리	주치장	1.2m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			
	2.	701	균형추가 이동하는 출입구	1.8m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			
	주차장치 출입구 내부 틈새			직경 10cm 이상 공간이 없을 것			
				발판과 벽과의 이격거리 15cm 이상			
				발판의 내폭 : 30cm 이상			
	<u>フ</u> ]			출입구까지 연결 및 추락방지 발판 설치			
15.	계 실			기계실바닥부터 사다리 높이 60cm 이상			
기타				작업공간의 높이 1.5m 이상			
		;	작업공간	점검구 크기 60*60cm 이상			
				점검구 덮개 설치			
	(-		주행로 왕복식만)	2단 초과시 2단마다 안전망 설치			
	기계장치의 노출부분			전동기, 감속기, 제동기, 감지장치 등 보호용 덮개설치 또는 방수형 사용여부			
		배	수설비	지하방식의 주차장치의 경우 바닥에 배수설비를 설치할 것			
	7	기타	안전기준	다른 법령에 의한 안전기준에 위배되지 않을 것			

■ 기계식주차장업무규정 [별표 4](제7조제1항 관련)

## 개방치차검사표

### 1. 개방치차

측정요소	1차(원동피니언)		2차(원동기어)		3차(구동피니언)		4차(중간기어)		5차(대기어)	
	설계치	측정치	설계치	측정치	설계치	측정치	설계치	측정치	설계치	측정치
잇수										
치폭(mm)										
피치원지름(㎜)										
경도(HB)*										

<sup>\*</sup> 경도(HB) 측정치 : 2. 개방치차 경도 검사표의 평균값

### 2. 개방치차 경도 검사표

측정요소	1차(원동피니언)	2차(원동기어)	3차(구동피니언)	4차(중간기어)	5차(대기어)
1차					
2차					
3차					
평균값					

■ 기계식주차장업무규정 [별표 5](제12조제2항 관련)

# 교정검사 대상 및 주기(기계식주차장 검사장비)

장 비 명	교정주기	장 비 명	교정주기
멀티미터	12월	초 시 계	24월
전 류 계	12월	버니어캘리퍼스	12월
접 지 저 항 계	12월	절 연 저 항 계	12월
RPM 미터	12월	진동측정기	12월
내외경퍼스	12월	클램프형 접지저항계	12월
레이저수평계	12월	각도측정기 (수평계)	12월
초음파두께측정기	12월	조도계	12월
열화상카메라	12월	줄자	24월
레이저거리측정기	24월	경도측정기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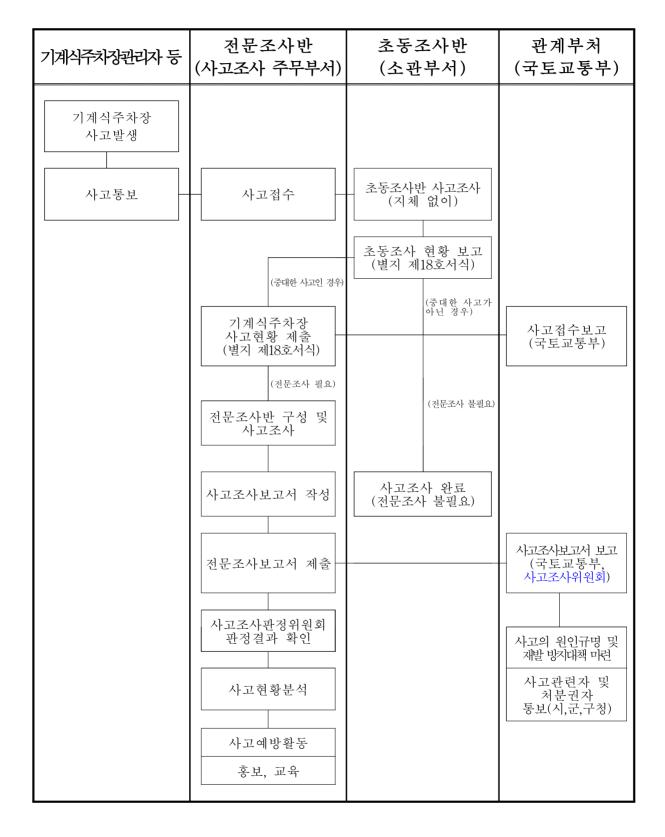
■ 기계식주차장업무규정 [별표 6] <삭제 2024.12.11.>

■ 기계식주차장업무규정 [별표 7](제17조 관련) <삭제 2024.12.11.>

■ 기계식주차장업무규정 [별표 8](제17조 관련) <삭제 2024.12.11.>

■ 기계식주차장업무규정 [별표 9](제29조 관련) <개정 2024.12.11>

# 기계식주차장 사고 처리 절차도



■ 기계식주차장업무규정 [별표 10] 삭제 <2023.10.17.>

■ 기계식주차장업무규정 [별표 11](제32조제1항 관련) <개정 2024.12.11>

## 사고조사보고서 작성방법

구 분	내 용
사고조사 경위	○사고내용(사고일시·장소, 피해규모, 사고인지 경위 등) ○사고 기계식주차장의 개요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 제작자, 보수업체 등 관련사항 ○피해자 관련사항 ○사고조사반 구성 및 운영
사고 조사・확인	○기계식주차장 관리자 등의 사고보고 의무 이행실태 및 조치사항 ○사고현장 실태 ○중대사고 해당여부 ○기계식주차장 관리자, 보수업자, 이용자의 법정의무 이행여부 ○사고발생 요인별 조사내용 ○사고기기의 결함 여부(측정 및 기준치) ○각종 검사의 적정여부
사고원인의 분석	○기기결함에 의한 사고원인 분석 ○법정의무 위반에 따른 사고원인 분석 ○사고원인 추정(종합)
사고재발방지	○사고재발방지 대책(기계식주차장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포함)
증거자료	ㅇ사고조사과정에서 입수한 증거자료

■ 기계식주차장업무규정 [별표 12](제34조 관련) <개정 2024.12.11>

## 기계식주차장 사고 분류기준

#### 1. 기계식주차장 종류별 분류기준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제2조 (주차장치의 종류)에 따름.

#### 2. 기계식주차장 사고 원인별 분류기준

- 직접적인 원인만 사고원인으로 분류함.

구 분	분 류 기 준
이용자 과실	ㅇ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 등
보수자 과실	○보수의 흠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보수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보수자가 점검 중 발생한 인명사고 등
관리자 과실	<ul> <li>○기계식주차장을 타 용도로 이용하도록 방치하여 발생한 사고</li> <li>○관리자가 기계식주차장 관련 시설물을 임의로 변경·교체하여 발생한 사고</li> <li>○사용금지된 기계식주차장에 사용금지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li> <li>○기계식주차장 기계실, 운전조작반, 기계식주차장 방화문 등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li> <li>○관리자의 안전규칙 미준수로 인해 발생한 인명사고</li> </ul>
환경적 결함	○기계식주차장의 개구부 및 틈새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
기계 결함	○기계장치의 손상 및 오작동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 등
기타	ㅇ태풍, 지진 등 기타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

### 3. 기계식주차장 사고 피해 유형별 분류기준

구 분	분 류 기 준
사망 사고	ㅇ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상해 사고	○기계식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실시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람이 발생한 사고
차량 사고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한 자동차가 전복 또는 추락한 사고
기타	ㅇ시행규칙 제16조의 19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사고

## 4. 관리인 배치 여부에 따른 분류기준

-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의무·자율 및 배치여부에 의한 분류

구 분	분 류 기 준	
자율 배치	○20대 미만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관리의 배치여부에 따른 사고	 긴
의무 배치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관리의 배치여부에 따른 사고	 인

### 5.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체 선임여부에 따른 분류기준

-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이 된 보수업체 선임 및 보수업체 선정여부에 의한 분류

구 분	분 류 기 준
보수업체 선정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이 된 보수업체가
(보수업 등록)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사고
보수업체 선정	○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미등록 된 보수업체가
(보수업 미등록)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사고
보수업체 미선정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체를 미선정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사고

■ 기계식주차장업무규정 [별표 13](제41조제1항 관련) <개정 2024.12.11>

## 교정검사 대상 및 주기(사고조사장비)

장 비 명	교정주기	장 비 명	교정주기
전 류 계	12월	멀티미터	12월
접지저항계	12월	초 시 계	24월
RPM 미터	12월	버니어캘리퍼스	12월
내외경퍼스	12월	절 연 저 항 계	12월
레이저수평계	12월	진동측정기	12월
초음파두께측정기	12월	클램프형접지저항계	12월
열화상카메라	12월	각도측정기(수평계)	12월
레이저거리측정기	24월	조도계	12월
오실로스코프	12월	푸쉬풀 게이지	12월
디지털토크렌치	12월		

■ 기계식주차장업무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 안전도심사 관리대장](제6조제1항 관련) <개정 2024.12.11>

### 기계식주차장 안전도심사 관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일자	제작사	신청자	종류	방식	중량	관할시도	결과	발급번호	발급일자	비고
123	2024.12.12.		홍길동	지능형	4단 각형 상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180도)) 40대형	22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	10-001	2024.12.29.	
124	2024.12.30.		이순신	승강기 슬라이드식		1850		부	보완	2025.1.8.	

■ 기계식주차장업무규정 [별지 제2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 안전도인증 관리대장](제6조제1항 관련) <신설 2024.12.11>

### 기계식주차장 안전도인증 관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일자	제작사	신청자	발급번호	종류 및 방식	명칭	중량	인증번호	인증일자	비고
123	2024.12.12.		홍길동	10-001	지능형 4단 상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180도)) 40대형		2200	2024-10-008	2024.12.29.	
124	2024.12.30.		이순신	보완	승강기 슬라이드식		1850		2025.1.8.	

■ 기계식주차장업무규정 [별지 제3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 (사용·정기·수시·정밀안전검사) 신청서 접수대장](제6조제2항 관련) <개정 2024.12.11>

## 기계식주차장 (사용·정기·수시·정밀안전)검사 신청서 접수대장

접수	접수	인	증내용	설치	ا (حالت	)   = l = l	אן בון און	검 사	
번호	일자	인증번호	종류 및 방식	대수	세약사	신성사	설치 장소	요청일	결 재

■ 기계식주차장업무규정 [별지 제4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 (사용·정기·수시·정밀안전검사·안전도심사·안전도인증) 접수증] (제6조제3항 관련) <개정 2024.12.11>

기계식주차	장 (사 <del>용</del> ·정기	기·수시·정밀안전검사·안전도심사·안전도인증) 접수	증
제 호	<u>5</u>	접수일자 :	
종 류 5	및 방 식		
설 치	장 소		
설 치	대 수		
제 2	작 사		
신청자	성 명		
신정사	주 소		
	브 예정일 행예정일)		
처 리	부 서		
※ 문의사형	<b>)</b> (전화)	(전송)	
	접수자	: (서명 또는 인)	
		한 국 교 통 안 전 공 단	

210mm × 297mm 인쇄용지(특급) 70g/m² ■ 기계식주차장업무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사용·정기·수시·정밀안전검사 확인증 및 사용금지표지 발급대장](제7조제3항 관련) <개정 2024.12.11>

## 기계식주차장 (사용·정기·수시·정밀안전)검사 확인증 및 사용금지표지 발급대장

확인증 번호	발급 일자	인증번호	종류 및 방식	제작사	신청자	설치 장소	불합격 내 용	비고

■ 기계식주차장업무규정 [별지 제6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 실적보고](제10조 관련) <개정 2024.12.11>

#### 기계식주차장 실적보고

문서번호 수 신 참 조 제 목()월기계식주차장(안전도심사·검사)실적보고

#### 1. 검사실적

7 H	고 스		검 사 시 행	미ㅋ	n) –		
구분	접 수	합격	불합격(%)	계	금월	누계	비고
	신 규						
안전도심사	재 검						
	계						
	신 규						
사용검사	재 검						
	계						
	신 규						
정기검사	재 검						
	계						
	신 규						
수시검사	재 검						
	계						
정밀안전검사	신 규						
	재 검						
	계						

#### 2. 시도별 검사실적

л н	기는뱀	고 스		검사시행		رد (ما دار ما	비고
구분	시도별	접수	합격	불합격(%)	계	미처리	
사용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사							

※접수 및 검사시행기수는 재검실적을 포함함

### 3. 종류별 검사실적

				검 사 시 행			
구분	종류	접수	 합격	불합격(%)		미처리	비고
	수직순환식		н ,	2 11 1(70)	- "		
	수평수환식						
	다층순환식						
	2 단 식						
	다 단 식						
안전도심사	승 강 기 식						
	승강기슬라이드식						
	평면왕복식						
	특수형식						
	지능형						
	수직순환식						
	수평수환식						
	다층순환식						
	2 단 식						
	다 단 식						
사용검사	승 강 기 식						
	승강기슬라이드식						
	평면왕복식						
	특수형식						
	지능형						
	계						
	수직순환식						
	수평수환식						
	다층순환식						
	2 단 식						
	다 단식						
정기검사	승강기식						
	승강기슬라이드식						
	평면왕복식						
	특수형식						
	지능형						
	계						
	수직순환식						
	수평수환식						
	다층순환식						
	2 단 식						
	다 단식						
수시검사	승강기식				· ·		
	승강기슬라이드식						
	평면왕복식						
	특수형식						
	지능형						
	계						
	수직순환식						
	수평수환식						
	다층순환식						
정밀안전검사	2 단 식						
	다 단식						
	승강기식						
	승강기슬라이드식						
	평면왕복식						
	특수형식						
	지능형						
	계						

### 4. 불합격 현황

#### 가. 안전도심사

불합격	불 합 격 세 부 내 용(항목수)								
기 수	축및체인 강도부족	전동기등 용량부족	안전장치 불 량	주차장 규격 미달등	기 타	계			
비율(%)									

### 나. 사용검사

불합격기수				
	불합격세부내용 항목수		불합격세부내용 항목수	
	출 입 문		전 동 기	
	출 입 구		감 속 기	
	통 로		기 제 동 장 치	
	운반기내정위치정차장치			
	안전가동확인장치		- 기	
	수동정지장치		시 브 (드 럼)	
	정위치정차장치		통 신 장 치	
	유압안전밸브	입출고 시간		
	플란자이탈방지장치		와이어로프및체인	
	체크밸브		- 재 료 운 반 기	
안	유압계 및 스톱밸브		- 규 - 주 차 철 골 격	
전 장			중 추	
치	승·하강안전장치		운반기 및 주차구획	
	수평이동안전장치		- - 승 강 로	
	자연하강보정장치		시 운 전	
	추 락 방 지 장 치			
	운반기수평보정장치		방향 전환 장치	
	지 능 형			
	기 타 안 전 장 치		기 타	

#### 다. 정기검사

불합격기수						
	불합격세부내용	항목수		불합격세부내용	항목수	
	출 입 문			운반기수평보정장치		
	之 日 让		-	지 능 형		
	운반기내정위치정차장치			기 타 안 전 장 치		
	안전가동확인장치			전 동 기		
	수 동 정 지 장 치			감 속 기		
	정 위 치 정 차 장 치		기 계	제 동 장 치		
			장 - 치 -	전 동 장 치		
	유 압 안 전 밸 브			유 압 장 치		
안	플란자이탈방지장치			통 신 장 치		
전 장 기	체 크 밸 브					
	유압계 및 스톱밸브		7]	기 초 및 구 조		
	승·하 강 안 전 장 치		ኛ	접 지 및 절 연 저 항		
	수평이동안전장치 자연하강보정장치		٨	] 운 전		
			방	향 전 환 장 치		
	추 락 방 지 장 치		7]	타		

#### 라. 수시검사

	불합격기수			
불합격세부내용 항목수		불합격세부내용	항목수	
	전 동 기		운 반 기	
주	감 속 기			
요	제 동 장 치		주 차 철 골	
구 동	전 동 장 치		시 운 전	
부	구 동 장 치			
	유 압 장 치		기 타	

#### 마. 정밀안전검사

불합격기수			
	불합격세부내용	항목수	불합격세부내용 항목수
	출 입 문		전 동 기
	운반기내정위치정차장치		감 속 기
	안전가동확인장치		기 제 동 장 치
	수 동 정 지 장 치		장 전 동 장 치
	정위치정차장치		치 구 동 장 치
	유 압 안 전 밸 브		유 압 장 치
	플란자이탈방지장치		통 신 장 치
	체 크 밸 브		와이어로프 및 체인
٥١	유압계 및 스톱밸브		
안 전	자동차문열림감지장치		, , ,
장	승·하강 안전 장치		접 지 및 절 연 저 항
치	수평이동 안전장치		시 운 전
	자연하강 보정장치		방 향 전 환 장 치
	추 락 방 지 장 치		승강로 및 주행로
	운반기내움직임감지장치 		운 반 기
	운반기수평보정장치		제 어 반
	지 능 형		조 도
	기타안전장치		기타

년 월 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장(인)

■ 기계식주차장업무규정 [별지 제7호서식의 검사기기 관리대장](제12조제7항 관련) <개정 2024.12.11>

### 검사기기 관리대장

관리번호	기 기 명	형 식	
제 작 사	규 격	제작번호	
제 작 일	설 치 일	구입가격	

#### 변 경 사 항

년 월 일	변	경	내	<u> </u>	사유 및 근거

#### 주 요 기 록 사 항

년 월 일	내 용	비고

210mm×297mm (일반용지120g/m²) ■ 기계식주차장업무규정 [별지 제8호서식의 검사기기 고장 발생(수리) 보고](제12조제7항 관련) <개정 2024.12.11>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신 주차안전처장 (경유)

제목 검사기기 고장 발생(수리) 보고

1. 「기계식주차장 업무규정」제12조(검사기기의 관리 등)관련입니다.

고장발생일시	수리완료일시	
관리번호	기 기 명	
형 식	제 작 사	
규 격	제작번호	
고장요소		
고장내용		
수리내용		
조치사항		
수리부품		
기타사항		

### 지역본부장 (인)

협	조	天	ŀ
---	---	---	---

시행 접수

우

전화번호 팩스번호

■ 기계식주차장업무규정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 신청서(현장 접수용)](제20조제3항 관련) <개정 2024.12.11>

#### 교육 신청서(현장 접수용)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생년월일
교육대상 구분		
관리인 신규교육 [ ], 관리인 5	보수교육 [ ], 안전관리 신규교육 [ ],	안전관리 보수교육 [ ], 보수원 안전교육 [ ]
교육장소		교육일자
주소(자택)		휴대폰번호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교육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생관리 및 보수교육 안내
- ※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자택주소, 휴대폰번호, 수료번호(보수교육만 해당)
-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의 교육이력 확인 시 필요사항으로 준영구 보유 이용됩니다.

동의함 [ ], 동의안함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안내 (개인정보 제3자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교육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기계식주차장 관리인교육 수료여부 확인
-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기계식주차장 사고조사를 위한 각종 자료(성명, 생년월일, 자택주소, 근무지주소, 휴대폰번호, 수료번호)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의 교육이력 확인 시 필요사항으로 준영구 보유 이용됩니다.

동의함 [ ]. 동의안함 [ ]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약 거짓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교육 수료 취소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학인서류 ○ 신분증 **하당 교육에 준함** 

#### 유의사항

- 1. 교육장에서 본인 확인 후 입실하여 교육을 수강하고, 교육 종료 후 수료증을 수령하면 됩니다.
- 2. 교육 중 1교시 이상 결석 할 경우 수료증 교부가 안되며, 납부한 수수료는 환불 불가
- 3. 근무일기준 교육 3일전까지 교육신청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폐강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재활용품)]

■ 기계식주차장업무규정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보수교육 신청서(현장 접수용)](제21조제3항 관련) <삭제 2024.12.11>

■ 기계식주차장업무규정 [별지 제11호서식의 교육결과 보고서](제21조제2항 관련) <개정 2024.12.11>

## (00월) 교육결과 보고서

i	□ 교육명 :							
	□ 일시 : 0000 . 00. 00.(수) (오전/오후) 00 : 00 ~ 00 : 00							
	□ 장소 :							
š	□ 교육내용 및 강사							
	과	목		시	간(h)	강사명		
	• 1교시 :							
	• 2교시 :							
	• 3교시 :							
	• 4교시 :							
	계							
ž	교육대상자							
						(단위 : 명)		
	교육 신청자	현장접수②	교육디	_	미이수자			
	<u> </u>	LOBI ©	(①+	②)	3	(1)+2-3)		
	사전접수① 미접수							

□ 총 수입결의 (수료자 × 수수료)

(단위 : 명, 원)

			<u> </u>
구 분	<b>수료자</b> (명)	<b>(인당)수수료</b> (원)	<b>계</b> (원)
• 현 금			
• 카 드			
• 선입금			
계			

□ 기타사항

ㅇ 업무보완 및 협조사항

■ 기계식주차장업무규정 [별지 제12호서식의 수료증 발급대장](제21조제2항 관련) <개정 2024.12.11>

### 수료증 발급대장

No	지역본부	교육구분	수료번호	교육 대상	성명	휴대폰 번호	전화번호	생년월일	거주지주소	근무지주소	수료 여부	수료일	비고

■ 기계식주차장업무규정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 결석 관리대장](제21조제3항 관련) <개정 2024.12.11>

## 교육 결석 관리대장

○ 지역본부 :

○ 교 육 명 :

○ 교 육 일 : 년 월 일

순번	성명	생년 월일		참석	여부		구분	환불 여부	비고
군인	88	월일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b>十</b> 世	여부	미ᅶ
1	김00	1960xxxx	0 / X	0 / X	0 / X	X	부분결시/ 완전결시		
2	임00	1959xxxx	0 / X	O / X	O / X	X	부분결시/ 완전결시	환불/ 미환불	
ø ø	o o o	,	*	ø ø	, ,	0	*	*	

■ 기계식주차장업무규정 [별지 제14호서식의 수료증](제22조제4항 관련) <삭제 2024.12.11>

■기계식주차장업무규정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수료증](제22조제10항관련) <삭제 2024.12.11>

■ 기계식주차장업무규정 [별지 제16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 정보망 이용 등록·말소(교육기관용) 신청서](제21조제 11항 관련) <신설 2024.00.00>

### 기계식주차장 정보망 이용 등록 말소(교육기관용) 신청서

섭수	번호		섭수일자		처리기간	3일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u></u> 기	바인정보 수집	및 · 이용 동의(필	수)									
수집	및 이용목적	보유 및 이용기점	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정토	계식주치장 브라리시스템 당 관련 업무	<u>준영구</u> (신청서 : 3년	신청인 : 상호(명칭)., 이용자 : 성명., 이용자 메일,	성명(대표자 번호., 일반전	·)., 주소, 법인등록 过화번호., 휴대전화	(번호(생년월일) 번호., 담당업무.						
	├집·이용  거부 권리		보 수집·이용을 동의하지 않 경우 이용자 등록 및 ID 발			항목에 대한 동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신청서 .>									
	상호(명칭)			법인등록변	번호							
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인 	주소			교육기관지정일								
교육구분	육 구 관리인 신규교육 [ ], 관리인 보수교육 [ ], 안전관리 신규교육 [ ], 안전관리 보수교육 [ ], 보수원 안전교육 [ ]											
	전화번호			- 내선반	년호							
기 타	휴대전화번	!호		- 000-0	0000-0000							
정 보	회사 메일			- 대표	메일(개인 회원가입	시 인증번호 발송)						
	운용기간			- 기간 - 기간	미지정 : 2000. 00. 지정 : 2000. 00. 0	. 00부터 0 ~ 2000. 00. 00.						
기계식주차장 업무규정 제21조제1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정보망 이용 등												
	록·말소(교육기관)를 신청합니다.											
				1.4	el 01							
				년 	월 일	/—· · · ·						
÷1	ᆲᇎᇬ	저고다 신다	<b>TL</b> =1=1	신청인		(직인)						
		전공단 이시										
확인	서류 <del></del>	○ 사임	다. 									
			처리저치									

검 토

담당부서

승 인

담당부서

결과통보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교육기관

접 수

담당부서

## 현장 접수대장

지역 본부	교육 구분	교육	교육 시간	성명	생년월일	전화 번호	휴대폰 번호	자택주소	건물명	7계식주사장 소재기	신분 확인 서류	접수 방법	결제 방법	참석 여부	수료 여부	수료 일	비고
<i>부산</i> <i>본부</i>	안전 관리 신규 교육	2020- 07-14	13:00 - 17:00	호기도	19470807	05112 3xxxx	0101234 xxxx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로 xxx	길동빌딩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로 XXX	신분증/ 여권	방문/ 인터넷	현금/ 카드	<i>참석/</i> 미참석	수료/ 미수료	2020- 07-14	
서울 본부	안전 관리 보수 교육	2024- 12-01	13:00 - 16:00	임꺽정	19550201	02212 2xxxx	0103214 xxxx	서울특별시 강남구 xxxx	서울빌딩	서울특별시 종로 구 xxx	신분증	방문/ 인터넷	현금/ 카드	참석/ 미참석	수료/ 미수료	2024- 12-01	

# 기계식주차장 사고처리대장

사고번호	소재지	종류 및 방식					사고					피해	유형		사고통보일	최초보고일 (공단→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보고일 (공단→국토부 사고조사위원희)	개최결과	후속조치	참고사항
접수일자	건물명	대수	보수사	관리인 유무	이용자 과실	보수자 과실	관리자 과실	환경적 결험	기계 결함	기타	사망	상해	차량	기타	초동조사일	전문조사일	위원회개최일			
																		-		

※ 사고번호 : 0000[해당연도] - 000[일련번호]

■ 기계식주차장업무규정 [별지 제19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 사고현황보고서](제30조제1항 관련) <개정 2024.12.11>

# 기계식주차장 사고현황보고서

	보고자	보고일					
	건물명	건물용도					
일반	건물주 성명	관리인 배치 여부					
현황	소재지	연락처					
	사고 발생 장소(설치호기)	사고 발생 일시					
	종류 및 방식	설치 대수 및 기수					
기계식주차장	제작사	보수사(연락처)					
현황	최초 정기검사 또는 사용검사 합격일	검사이력					
	중대사고 여부	현장보존 조치 필요 여부					
	[ ] 중대사고 [ ] 중대사고 해당안됨 [ ] 중대사고 여부 판단 곤란(전문조사 필요)	[ ] 현장보존 조치 필요, [ ] 현장보존 조치 불필요					
사고 내용	① 피해자 인적사항(성명, 나이, 성별, 피해정도	)					
	② 자동차 피해사항(차종, 피해정도)						
	③ 사고 내용 및 원인						
비고	사고 내용 설명 그림 등 필요한 자료를 붙임자료로	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기계식주차장업무규정 [별지 제20호서식의 외부조사원 등록 신청서](제37조제2항 관련) <개정 2024.12.11>

# 외부조사원 등록 신청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	문분야		
자 택	주 소	(우	-편번호 )					
^f 역 	전화번호			휴 대	폰			
	직 장 명			직위(직	]급)			
직 장	주 소	(우	-편번호 )					
7 0	전화번호			팩스번	호			
	e-mail							
	취득년월		학 교	학	위		전	공
학력사항								
, , , ,								
								_
	근무기간		근 무 처	직	위		주요'	업무
경력사항								
	2) [ 1 0 0		의 권 Z H	A) -1 -1 -1 -1 -1 -1 -1 -1 -1 -1 -1 -1 -1	a) a) a)		, 1Ì	-
	취득년월		자 격 증 명	인가·관i	리기판		刊	고
자 격 증 보유현황								
<u> </u>								
 저서 및								
시시 는 는 문								
기타사항								

*	신청서 자료는	한국교통안전경	공단 기계식주차	장 외부	조사원 위	H촉자료로만	활용.	
	위와 같이 '외	부조사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학	합니다.				
						작성	자 :	(인)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기계식주차장업무규정 [별지 제21호서식의 보안 및 청렴 서약서](제35조제1항 관련) <개정 2024.12.11>

## 보안 및 청렴 서약서

본인은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기계식주차장 사고조사업무를 청렴하게 수행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사고조사업무와 관련하여 조사가 공정하게 수행되고, 객관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어떠한 명목 으로도 금품이나 향응 등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도 않겠습니다.
- 본인은 주어진 사고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내·외부 압력 또는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조사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 사고조사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사고관련 정보 및 기밀사항은 일체 외부로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 본인은 본인과 배우자가 사고관련자가 아니며, 사고관련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본인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 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지 않습니다.
- 본인은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한 법인이 사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증언이나 감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고 관련자의 관계인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며, 사고원인이 된 작위·부작위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기계식주차장업무규정 [별지 제22호서식의 확인증](제39조제1항 관련) <개정 2024.12.11>

# 확 인 증

■ 서	ㅁ: •	
<b>■</b> ′8′	~ ~ ·	

■ 생 년 월 일 : \_\_\_\_\_

상기 본인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5(사고조사반의 구성·운영 등)제3항에 따라 ○○○○년 ○○월 ○○일 기계식주차장 사고 현장인 ○○○이에서 기계식주차장 사고조사원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조사원: (서명)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기계식주차장업무규정 [별지 제23호서식의 사고조사장비 이력대장](제41조제2항 관련) <개정 2024.12.11>

# 사고조사장비 이력대장

관리번호	장 비 명	형 식	
제 작 사	규 격	제작번호	
제 작 일	설 치 일	구입가격	

#### 변 경 사 항

년 월 일	변	경	내	용	사유 및 근거

#### 주 요 기 록 사 항

년 월 일	내 용	비고

210mm×297mm (일반용지120g/m²)